

다.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사용종료 비용 포함(안 제30조제1항)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출할
 경우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및 최종복토(最終覆土)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대통령령 제2690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4조의4(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5(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대여방법: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計算)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 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 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5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또는 기금법인”을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법 제93조”를 “법 제93조(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너목까지 및 머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 법 제57조(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1호	100만원
거. 법 제65조(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1호	100만원
너. 법 제69조(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1항	300만원
머.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50만원
버.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50만원
서.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	150만원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12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손실보전거래 상품에 관한 사항과 예탁된 우리사주의 대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 근거 마련(제14조제2항 신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출연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생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조합원이 적립(積立)하여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한 우리사주 취득 기한의 연장(제17조제2항 신설)

1)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에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그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은 그 약정한 기간 종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적립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우리사주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초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함.

라. 예탁된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 및 대여방법 등(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

1)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수탁기관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차거래의 중개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도록 함.

2) 우리사주를 예탁 받은 수탁기관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를 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